

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노동자들의 오랜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편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0.30.(금) 서울경제, 임금총액 8% 매달 적립...“운영자금도 묶일 판”
파이낸셜뉴스, 퇴직금 체불 잡는다지만...영세사업장 절반이 “부담
아주경제, 2030년까지 퇴직연금 의무화...영세 기업들 ‘부담’
한국경제, 퇴직연금 전환 안하면 ‘푸른씨앗’ 자동 가입

2. 설명 내용

- 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작년 말 기준 약 8,229억원 규모의 퇴직금 체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편임
 - '25년말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.1%(8,229억원)로 퇴직금 체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
 - 그러나, 현행 퇴직금제도는 퇴직 시점에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노동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
 -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업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, 원래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를 재직 중 미리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26만여 명 노동자의 체불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효과
- ② 10인 미만 사업장의 목소리도 꼼꼼하게 들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, 의무화 이전 계속근로기간은 소급 적용하지 않을 계획
 -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(1,500개소)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 규모('28년 100인 이상, '29년 10~99인, '30년 10인 미만)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영세·중소기업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

- 실태조사(응답 사업장의 90.3%가 10인 미만) 결과, 준비 필요기간을 3년 이내로 응답한 경우가 80.1%로 의무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은 과도함
 - 또한, 사외적립 의무는 각 사업장의 의무화 시행 이후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되므로, 그간 발생한 퇴직급여를 일시에 사외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님
- ③ 정부는 영세·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·금융지원도 병행
- '27년 정부예산안에 퇴직연금 조기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 (60억), 경영자금 용자비용 보전(62억원)사업 총 122억원을 신규 편성
 - 아울러 영세·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 특례 적용, 규약신고의무 간소화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도 완화할 예정
- ④ 이번 방안은 영세·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태조사부터 의무화까지 노사정이 매 단계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련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
- ⑤ 정부는 퇴직금 체불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영세·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,
- 노사·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위한 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」 개정과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음
- ⑥ 한편,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(‘푸른씨앗’) 가입대상 확대와 사외적립 의무화 미도입 사업장 자동가입에 대응하여 인력·시스템 등 운용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남성욱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	이혜민 (044-202-7657)